

문화발전기금

2026년 '마카오 요소' 영상 및 중국 내 영화의 포르투갈어권 국가 대상 홍보·배급 자금 보조 계획



계획 소개

- 마카오 요소를 갖춘 영상 작품의 홍보 및 배급을 장려
- 마카오 및 형친 협력구 요소를 갖춘 마이크로 슛폼 드라마의 홍보 및 배급을 지원
- 중국 내 영화를 마카오를 포르투갈어권 국가 및 지역의 배급 거점으로 삼아 추진



신청 기간

제1라운드 2026년 2월 2일 오전 9시부터 3월 31일 밤 12시까지

제2라운드 2026년 4월 1일 오전 0시부터 6월 30일 밤 12시까지

제3라운드 2026년 7월 1일 오전 0시부터 8월 31일 밤 12시까지

제4라운드 2026년 9월 1일 오전 0시부터 11월 27일 오후 5시 30분까지

*총예산은 500만 마카오 파타카이며, 그중 마카오·형친 요소를 포함한 미니 단편 드라마 예산은 150만 마카오 파타카입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기간은 조기 종료됩니다.



지원 정원

상한 없음, 각 라운드
신청 기간별로 심사



지원 기간

12개월

자세한 사항은 지원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문화발전기금

2026년 '마카오 요소' 영상 및 중국 내 영화의 포르투갈어권 국가 대상 홍보·배급 자금 보조 계획



지원 범위

홍보·배급 지원을 신청하는 영상물은 다음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작품 유형	총 러닝타임 (광고 제외)	단편당 러닝타임 (광고 제외)
TV 드라마	≥ 225분	≥ 20분
영화	≥ 80분	--
예능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	≥ 30분
뮤직비디오 (MV)	≥ 3분	--
광고 영상	≥ 30초	--
마이크로 단막극 (마카오·형친 요소 한정)	≥ 60분	≤ 19분

* 동일 시즌의 각기 다른 회차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마카오 요소 영상물(마이크로 스포츠 드라마 제외):

완성되어 상영 가능한 TV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MV) 또는 광고 영상이어야 하며, 소재에 마카오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마카오-형친 요소 마이크로 스포츠 드라마:

완성되어 상영 가능한 마이크로 스포츠 드라마여야 하며, 소재에 마카오 및 형친 협력구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내지 영화(중국 본토 영화):

완성되어 상영 가능해야 하며, 최초 제작 주체가 내지(중국 본토) 법인이어야 하고, 국가영화국 공영 허가증을 이미 취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원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문화발전기금

2026년 '마카오 요소' 영상 및 중국 내 영화의 포르투갈어권 국가 대상 홍보·배급 자금 보조 계획



홍보·배급 요구사항

신청 항목	홍보·배급 지역
마카오 요소 영상·영화 작품	제한 없음
마카오-형친 요소 미니 시리즈	해외에 한함
중국 내지 영화	포르투갈어권 국가 및 지역에 한함

다음 중 최소 한 가지 방식을採用하고,
추가로 관련 프로모션 활동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영화제 참가

또는

공개 상영

TV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장 개봉/상영 ● TV 방송 ● 종합 영상 플랫폼 배급/상영 ● 영화제 상영 ✗ 자체 운영의 셀프 미디어 플랫폼에 올려 재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뮤직비디오(MV), 광고 영상	<table border="0"> <tr> <td> 온라인 재생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웹사이트 ● 텔레비전 </td> <td> 오프라인 재생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핑몰/야외 TV ● 교통수단 내 TV </td> </tr> </table> <p>방영 기간은 연속 5일 이상이어야 함</p>	온라인 재생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웹사이트 ● 텔레비전 	오프라인 재생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핑몰/야외 TV ● 교통수단 내 TV
온라인 재생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웹사이트 ● 텔레비전 	오프라인 재생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핑몰/야외 TV ● 교통수단 내 TV 		
마이크로 숏폼 드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영상 플랫폼/마이크로 숏폼 드라마 모바일 앱 배급 ✗ 자체 운영의 셀프 미디어 플랫폼에 올려 재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지원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문화발전기금

2026년 '마카오 요소' 영상 및 중국 내 영화의 포르투갈어권 국가 대상 홍보·배급 자금 보조 계획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신청인은 영상·영화 작품의 저작권 보유 기관 또는 위임받은 대리 홍보·배급사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카오 특별행정구 거주자인 자연인 사업자

또는

마카오 특별행정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업자

* 대리 홍보·배급사는 영화·영상 배급 관련 업무를 영위해야 합니다



지원 유형

- 보조금
- 배정되는 지원 상한은 신청 프로젝트의 홍보·배급 예산 지출의 60%에서 80%로, 구체 비율은 심사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화·TV작품유형

배정 지원 상한(마카오 파타카)

TV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50만 파타카

마이크로 숏폼 드라마,
뮤직비디오(MV), 광고 영상

25만 파타카

* 실제 지원 금액은 실제 홍보·배급 지출, 영화제 참가 횟수 또는 송출(플레이) 채널 수에 따라 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원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문화발전기금

2026년 '마카오 요소' 영상 및 중국 내 영화의 포르투갈어권 국가 대상 홍보·배급 자금 보조 계획

지원 지출 범위



제작 지출

- 내지 영화는 마카오 공급업체에 한해 포르투갈어 자막 및 더빙 비용
- 기타 영상·영화 작품은 외국어 자막 및 더빙 비용에 한함



장소, 사무실 및 기타 부동산 임차 지출

- 상영 또는 홍보 행사 장소 임대료에 한함



장비 및 기타 동산 임차 지출



홍보 및 공보 지출



교통, 출장 및 운송 지출

- 비경제석 이용 시 차액은 자부담



숙박 경비

- 일반/스탠다드 객실

*본 보조금 계획의 홍보·배포 지역 요건에 부합하는 관련 지출만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제품의 비용은 예산 지출 범위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원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문화발전기금

2026년 '마카오 요소' 영상 및 중국 내 영화의 포르투갈어권 국가 대상 홍보·배급 자금 보조 계획



평가 기준

30%



마카오·아오천(미니 단편 드라마)
또는 중화 문화(내지 영화)의
전체적인 긍정적 이미지 정도

30%



영상 작품의 국제적
인지도와 시장 영향력,
특히 '일대일로' 및
포르투갈어권 국가와
지역에서의 영향력

20%



신청인의 관리 수준, 기업 규모
및 현지 고용 현황, 집행 및
주요 팀의 전문 기술 역량, 과거
관련 배급 경험

10%



홍보·배급 계획의 실행 가능성

10%



홍보·배급 지출 예산의 합리성

* 또한 신청인의 과거 3년간 집행 및 상환 기록과 활동 및 프로젝트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문의 방법

전화: 2850 1000
이메일: dgaf@fdc.gov.mo
웹사이트: www.fdc.gov.mo

자세한 사항은 지원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2026년 '마카오 요소' 영상 및 중국 내 영화의 포르투갈어권 국가 대상 홍보·배급 자금 보조 계획

1 지원 목적

문화발전기금은 본 지원 계획을 통해 마카오 요소를 갖춘 영화·TV 작품의 홍보 및 배급을 장려합니다. 지원 범위에는 마카오 및 형친(橫琴) 광둥-마카오 심층 협력구 요소를 갖춘 마이크로 단편 드라마가 포함되며, "마카오-형친 공동 구축 마이크로 단편 드라마 해외 진출 기지"의 구성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중국 내 영화가 마카오를 포르투갈어권 국가와 지역의 배급 거점으로 삼도록 장려하여, 마카오의 문화 교류 교량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2 신청 기간

2.1 신청 기간은 총 네 차수로 나뉘며, 각 차수 신청 마감 후 해당 기간에 제출된 프로젝트 신청을 일괄 심사합니다. 각 차수의 지원 정원에는 제한이 없으며, 본 지원 계획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기간은 조기 종료되고 기금 웹사이트를 통해 대외 공지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	2026년 X월 X일 오전 9시부터 3월 31일 밤 12시까지
제2차	2026년 4월 1일 오전 0시부터 6월 30일 밤 12시까지
제3차	2026년 7월 1일 오전 0시부터 8월 31일 밤 12시까지
제4라운드	2026년 9월 1일 오전 0시부터 11월 27일 오후 5시 30분까지

3 지원 범위

3.1 아래 기준의 분량을 충족하는 영상·영화 작품의 홍보 및 배급에 해당하며, 동일 시즌의 서로 다른 에피소드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1.1 광고 제외 전체 분량이 225 분 이상이며, 단일 회차 길이가 20 분 이상인 TV 드라마;
- 3.1.2 러닝타임 80 분 이상인 영화;
- 3.1.3 광고 제외 단일 회차 길이가 30 분 이상인 예능 프로그램 또는 다큐멘터리;
- 3.1.4 광고 제외 전체 분량이 60 분 이상이며, 단일 회차 길이가 19 분을 넘지 않는 초단편 드라마;
- 3.1.5 러닝타임 3 분 이상인 뮤직비디오(MV);
- 3.1.6 재생 시간이 30 초 이상인 광고 영상.

4 지원 요구사항

4.1 영상·음향 작품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4.1.1 마카오 요소가 포함된 영상·음향 작품(마이크로 숏폼 드라마 제외): 작품은 상영 가능한 상태로 촬영·제작이 완료된 TV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MV) 또는 광고여야 하며, 마카오를 촬영지로 삼거나 마카오의 향토 음식, 도시 경관, 설화 전승, 풍속 고사, 역사 문화, 인물 행적 등의 소재를 주제로 하는 등 마카오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4.1.2 마카오-형친(澳琴) 요소가 포함된 마이크로 숏폼 드라마: 작품은 상영 가능한 상태로 촬영·제작이 완료된 마이크로 숏폼 드라마여야 하며, 마카오 및 형친(주: 형친 광둥-마카오 심층 협력구, 이하 '澳琴')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카오와 형친을 촬영지로 하거나, 현지 음식, 도시 경관, 이야기 전승, 풍속 고사, 역사 문화, 인물 행적 등의 소재를 주제로 해야 합니다.

4.1.3 중국 본토 영화: 작품은 상영 가능한 상태로 촬영·제작이 완료된 중국 본토 영화여야 하며, 제 1 출품 단위가 본토

법인이고, 국가영화국이 발급한 '영화 공영 허가증'을 이미 취득해야 합니다.

4.2 영상·음향 작품 홍보·배급 측면:

4.2.1 지원 대상 홍보·배급 지역:

4.2.1.1 제 4.1.1 항에 해당하는 마카오 요소 영상·음향 작품(마이크로 샷폼 드라마 제외)의 경우, 홍보·배급 지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4.2.1.2 제 4.1.2 항에 해당하는 마카오-형친(澳琴) 요소 마이크로 샷폼 드라마의 경우, 지원 대상 홍보·배급 지역은 해외로 한정됩니다.

4.2.1.3 제 4.1.3 항에 해당하는 중국 본토 영화의 경우, 지원 대상 홍보·배급 지역은 포르투갈어권 국가 및 지역으로 한정됩니다(포르투갈어권 국가 및 지역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s://www.platformchinapl.m.o/overview.shtml>).

4.2.2 다음 중 최소 한 가지 방식으로 영상 작품의 홍보·배급을 실시하며, 추가로 관련 홍보·프로모션 활동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4.2.2.1 영화제에 참가;

4.2.2.2 공개 상영(공개 재생)을 진행.

4.2.2.2.1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공개 상영은 공개 상영을 의미하며, 극장 개봉 또는 상영, 텔레비전 방송, 종합 영상·비디오 플랫폼(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함)에서의 배급 또는 상영, 영화제 상영을 포함하되, 자체적으로 셀프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여 재생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4.2.2.2.2 마이크로 샷폼 드라마에 대해서는, 공개

상영은 종합 영상·비디오 플랫폼(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함) 또는 마이크로 쇼폼 드라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의 배급을 의미하며, 자체적으로 셀프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여 재생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4.2.2.2.3 뮤직비디오(MV), 광고 영상에 대해서는, 공개 상영은 인터넷 웹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에서의 재생, 텔레비전 방송, 쇼핑몰 또는 옥외 전광판, 교통수단의 텔레비전 등 오프라인 매체에서의 방송을 의미하며, 재생 기간은 연속 5 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3 기금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 내용은 마카오의 다른 공공 부서 또는 공공 기관의 재정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동시에 기금의 다른 계획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5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5.1 신청인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개인 상인 또는 법인 상인이어야 하며, 영상 작품의 저작권 보유 기관이거나 영상 작품의 어느 한 제작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 홍보·배급사여야 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1.1 개인 상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마카오 특별행정구 주민이어야 하며, 그 기업은 세무 목적상 재정국에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5.1.2 법인 상업 기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해당 기업은 세무 목적을 위해 이미 재정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5.2 영상 작품의 대리 홍보·배급사의영업 사업은 영상 배급과 관련되어야 함(제 12.1.1 항의 상업 등기 정보, 제 12.1.2 항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제 12.1.4 항의 부가가치세 과세 영수증을 기준으로 함)

6 지원 유형

6.1 보조금.

7 본 지원 계획의 총예산 금액, 지원 건수 및 금액 상한

7.1 본 지원 계획 총예산 금액:500 마카오 파타카(MOP), 그중 마카오.칭진(澳琴) 요소를 갖춘마이크로 슷폼 드라마예산은 150 마카오 파타카(MOP)임.

7.2 지원 건수:제한 없음으로, 매 회 신청 기간별로 심사를 진행함. 다만 최종 승인되어 지원을 받는 신청 프로젝트 수량은, 상기 본 지원 계획 총예산 금액에 의해 제한됨.

7.3 보조금:지급되는 지원 상한은 신청 프로젝트의홍보·배급 예산 지출(즉 제 8.1 항 및 제 8.2 항 합계)의 60%~80%로, 획득한 심사 점수와 연동되며,아래 표의 금액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영상 작품 유형	지급 지원 상한(마카오 파타카)
TV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500,000
마이크로 단편극, 뮤직비디오(MV), 광고영상	250,000

7.4 실제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의 실제 홍보·배급 지출, 영화제 참가 횟수 또는 재생 채널 수에 따라 조정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제 9 항 지원 조정을 참조).

8 지원 가능 및 지원 불가 비용 범위

8.1 지원 가능하며 예산 지출에 포함되는 비용에는 지원 기간

내에 수혜자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지출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8.1.1 제작 비용:

8.1.1.1 중국 본토 영화의 경우, 마카오 공급업체가 제작한 포르투갈어 자막 및 포르투갈어 더빙 비용에 한함;

8.1.1.2 그 밖의 영화·영상물의 경우, 외국어 자막 제작 및 외국어 더빙 비용에 한함.

8.1.2 장소, 사무소 및 기타 부동산 임대 비용: 상영 행사 또는 홍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지급한 장소 임대료에 한하며, 전대가 포함되는 경우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1.3 설비 및 기타 동산 임차 지출: 상영 행사 또는 홍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임차하는 데 드는 비용에 한함;

8.1.4 홍보 및 PR 지출: 영상물의 배급 또는 홍보를 위해 발생하는 홍보물 제작비, 전시(참가) 비용, 시사회 비용, 배급 비용(영화관 상영료, 온라인 매체 입점료 포함), 광고비, 그리고 홍보 행사 개최 비용을 의미합니다.

8.1.5 교통, 출장 및 운송 지출: 영화제 참가를 위한 이코노미 클래스 교통비만 지원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한 일정의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가(예: 공식 웹사이트에 표시된 동일 시간 동일 항공편의 이코노미 클래스 가격)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코노미 클래스 가격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8.1.6 숙박 지출: 영화제 참가를 위한 숙박 비용(일반/스탠다드 객실)에 한합니다.

8.2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예산 지출로 산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8.2.1 기타 지출: 합의된 절차의 집행 비용에 한합니다.

8.3 홍보·배급 예산 지출 범위는 다음 지역 제한을 받으며, 기타 지출 및 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제품의 비용은 예산 지출 범위로 보지 않습니다:

8.3.1 제 4.1.1 항의 마카오 요소 영상 작품에 대해서는, 홍보·배급 지역과 무관하게 제 8.1 항 및 제 8.2 항에 명시된 지출이 홍보·배급 예산 지출 범위로 인정됩니다.

8.3.2 제 4.1.2 항의 아오친 요소 미니 단편극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홍보·배급을 진행하며 발생한 제 8.1 항 및 제 8.2 항에 명시된 지출만 홍보·배급 예산 지출 범위로 인정됩니다.

8.3.3 제 4.1.3 항의 내지(중국 본토) 영화 작품에 대해서는, 포어권 국가 또는 지역에서 홍보·배급을 진행하며 발생한 제 8.1 항 및 제 8.2 항에 명시된 지출만 홍보·배급 예산 지출 범위로 인정됩니다.

9 지원 조정

9.1 총괄 시점에 지원 대상 프로젝트의 **실제 지출이 원래 예산 지출보다 낮을 경우, 비율에 따라**[(예산 홍보 지출-실제 홍보 지출)/예산 홍보 지출]로 지원 금액을 조정합니다.

9.2 총괄 시점에 지원 대상 프로젝트의 **실제 영화제 참가 횟수가 원래 계획의 80%(반올림하여 정수 처리)보다 적을 경우, 비율에 따라**[(예정 횟수-실제 횟수)/예정 횟수]로 지원 금액을 조정합니다.

9.3 총괄 시점에 지원 대상 프로젝트의 **실제 방송/재생 채널 수가 원래 계획의 80%(반올림하여 정수 처리)보다 적을 경우, 비율에 따라**[(예정 수량-실제 수량)/예정 수량]로 지원 금액을 조정합니다.

9.4 복수의 하향 조정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하향 조정

비율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그중 가장 큰 하향 조정 비율을 최종 조정 비율로 적용합니다.

- 9.5 불가항력 또는 재단 행정위원회가 지원 대상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확인한 사유로 인해 제9.2항 또는 제9.3항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재단은 지원 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지원 기간

- 10.1 지원 기간은 **12 개월이며**, 가장 빠르게는 온라인에서 신청 제출 확인을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할 수 있고, 가장 늦게는 협약서 체결 후 익월 1 일에 시작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작일은 재단과 지원 대상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 10.2 지원 대상자는 지원 기간 내에 지원받은 프로젝트의 수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10.3 지원 대상자가 지원 기간 내에 적절한 사유를 갖춘 사전 신청을 제출한 경우, 재단 행정위원회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지원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누적 연장 기간은 원래 지원 기간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0.4 상기 신청을 기한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재단은 접수하지 않으며, 단 불가항력 또는 기타 지원 대상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는 예외로 합니다.

11 담보

- 11.1 신청인이 법인 상업 기업주인 경우, 주요 주주는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보조금 배정이 취소되거나 프로젝트의 실제 지출이 예산 지출보다 적은 경우와 같이 보조금을 환회 또는 반환해야 할 때의 채무를 보증하여야 하며, 다만 주요 주주가 공법인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11.2 위 항에서 지칭한 수혜자 및 보증인은 보조금 금액에 상응하는 약속어음 및 책임확인서를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서명은 현장에서 인증되어야 합니다.

- 11.3 수혜자가 종합보고서가 기금에 의해 접수된 후 전액 보조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 위 항에서 지칭한 보증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2 신청

- 12.1 신청인은 一戶通/商社通 실체 사용자 계정으로 문화발전기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 문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1.1 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의 상업 등기 증명서;
 - 12.1.2 재정국이 발급한, 신청인이 결산된 세금, 세목 및 기타 어떠한 금액으로도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채무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12.1.3 영업세 신고서(M/1 양식) 또는 재정국이 발급한 개업 신고서;
 - 12.1.4 신청인의 최근 영업세 부과 영수증 - M/8 양식;
 - 12.1.5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기여금 납부 증명서.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밝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12.1.6 기업의 최근 2 년 손익계산서(기금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가능);
 - 12.1.7 신청인이 신청 프로젝트의 저작권 보유 기관으로서 해당 영상물의 사용 권한을 가진다는 증명, 또는 신청인이 신청 프로젝트의 대행 홍보·배급사로서 제작사로부터 관련 위탁 서비스를 부여받았다는 증명;
 - 12.1.8 국가영화국이 발행한 영화 공개상영 허가증(만약 신청 프로젝트가 제 4.1.3 항에서 지칭하는 중국 본토 영화에 해당하는 경우);
 - 12.1.9 해당되는 경우관할 권한 기관이 발행한 상영 허가 증명서류;

- 12.1.10 신청 프로젝트의 홍보·배급 계획에 관한 상세 기획서;
 - 12.1.11 신청 프로젝트의 홍보·배급 비용 예산(기금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권장);
 - 12.1.12 신청인의 영상물 홍보·배급 분야 경력, 프로젝트 실행 팀의 이력 및 배경, 기타 참여한 홍보·배급 프로젝트 관련 자료;
 - 12.1.13 공개 상영 및 공개 발표 예정인 신청 프로젝트 영상물의 완성본(링크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 가능하나, 추가 계정 등록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바로 다운로드 가능한 링크여야 함. 실물 자료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제 12.2 항에 따라 사전 신고할 것);
 - 12.1.14 해당되는 경우기타 신청에 도움이 되는 문서, 예: 신청 프로젝트 영상물 소개 및 제작팀 소개, 다른 협력사와 체결한 작품의 홍보·배급 관련 협약 문서, 견적서 등, 그리고 제 19.5 항에서 지칭하는 해당되는 경우의 연관 거래 신고 문서.
- 12.2 신청인은 입력한 정보 및 업로드한 문서가 정확무오해야 하며, 업로드가 불가능한신청 프로젝트 영상물 완성본 또는 기타실물 자료의 현장 제출에 대해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제출을 확인한 이후에는프로젝트 내용을 수정할 수없습니다.
- 12.3 신청인은 신청 마감일 이전에 직접 재단에 방문하여 제 12.2 항에서 명시한 사전 온라인 입력 후 현장 제출하는 실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단은 마감 이후 제출과 온라인 시스템에 사전 입력되지 않은 신청 서류 및 자료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12.4 신청서 작성 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12.5 신청 시 준수해야 할 규정 및 유의사항:

- 12.5.1 신청인은 온라인 시스템에서 동의함으로써 제 12.1.1 항에 따른 상업 등기 증명 및 제 12.1.2 항에 따른 무채무 증명의 조회를 기금이 지원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서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12.5.2 기금은 신청인에게 원본 서류 제시, 설명 제출 및 신청 서류철을 구성하는 데 불가결한 기타 문서, 보고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2.5.3 기금에서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된 문서 및 자료에 대한 신청인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12.5.4 신청인은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타 불법 수단을 이용하여 지원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 12.5.5 만약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기금에 통지해야 하며, 신청은 즉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12.5.6 본 계획과 관련하여 기금이 접수한 모든 문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13 초보 분석

- 13.1 기금은 신청 서류철에 대해 초보 분석을 실시하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이 해당 신청을 각하하여 심사 절차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13.1.1 신청 항목이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13.1.2 신청 항목이 제 1 점에서 지칭하는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13.1.3 신청 항목이 제 3 점에서 지칭하는 지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13.1.4 신청 항목이 제 4 점에서 지칭하는 지원 요구에

- 부합하지 않습니다;
- 13.1.5 신청 항목이 제 5 점에서 지칭하는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 13.1.6 신청 서류가 제 12 점에서 지칭하는 신청 규정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13.1.7 신청인은 기금의 다른 지원받은 프로젝트에서 연체 미상환/미반환/미회수 금액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 13.1.8 신청인이 기금의 지원 거부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13.1.9 신청 항목이 마카오의 다른 공공 부서 또는 공공 기관에서 이미 공표한 지원 계획 범위에 속합니다;
 - 13.1.10 신청인이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 중복 신청을 하였습니다(동일한 프로젝트가 발생한 경우, 최신 제출된 프로젝트 신청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신청은 반려됩니다);
 - 13.1.11 신청 항목인 영상 작품이 7 월 8 일 제 10/78/M 호 법률(본 지역에서 음란 및 외설 물품의 판매, 진열 및 전시에 관한 조치)에서 말하는 포르노 영화에 해당하거나, 해외에서 포르노 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인 경우;
 - 13.1.12 신청 항목이 외설, 폭력, 포르노, 음란, 도박, 비속어, 암시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 13.1.13 신청 항목의 내용이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합니다;
 - 13.1.14 신청 항목의 내용이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 및 문화발전기금의 이미지와 명성을 훼손합니다;
 - 13.1.15 신청 항목의 내용이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 13.1.16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추가 제출한 서류가 여전히

규정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13.2 제 12.1.1 점부터 제 12.1.9 점에 따른 서류 제출이 누락되었거나 관련 서류가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금은 신청인에게 5 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3.3 신청 반려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금 행정위원회는 신청 서류를 활동 및 프로젝트 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14 심사 및 교부 결정

- 14.1 활동 및 프로젝트 심사위원회 위원은 행정위원회 주석이 심사 대상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명단에서 3 명~7 명의영화·영상 분야, 학계, 상업 분야전문가를 초청하여 맡깁니다.
- 14.2 활동 및 프로젝트 심사위원회는 최소 과반수 위원이 출석해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심사 결과와 회의의 중요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 14.3 신청인의 대표는 심사 회의에 참석하여 신청 프로젝트의 내용을 소개하고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 심사를 진행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14.4 활동 및 프로젝트 심사위원회는 다음 심사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100 점 만점):
 - 14.4.1 프로젝트가 마카오, 아오친(미니 단편극의 경우) 또는 중화 문화(중국 내지 영화의 경우)의 전반적인 긍정적 이미지 제고 정도(30%);
 - 14.4.2 영상 작품의 국제적 명성과 시장 영향력, 특히 일대일로 및 포르투갈어권 국가와 지역에서의 영향력(30%);

- 14.4.3 신청인의 관리 수준, 기업 규모 및 현지 고용 상황, 실행 및 주요 팀의 전문성과 기술 역량, 과거 관련 영상 배급 경험(20%);
- 14.4.4 홍보·배급(선전·발행) 계획의 실행 가능성(10%);
- 14.4.5 홍보·배급(선전·발행) 지출 예산의 합리성(10%).
- 14.5 **심사 점수가 60 점 이상이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봅니다.**
- 14.6 다음 의견 및 기록을 충분히 고려한 후, 교부 기관은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 14.6.1 활동 및 프로젝트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 14.6.2 신청인의 과거 3 년 동안 승인받은 지원 활동 및 프로젝트의 집행과 상환 기록(특히 서면 경고, 지원금 감액 및 지원 취소 기록).
- 14.7 기금 행정위원회는 자체 의견 또는 활동 및 프로젝트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청 프로젝트의 내용을 조정하고, 보완을 수행하며, 기금이 지정한 형식에 따라 신청 자료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4.8 지원 배정 금액은 신청 프로젝트의 예산 규모 및 획득한 평가 점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 14.9 기금 행정위원회는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지원 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14.9.1 신청 프로젝트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14.9.2 신청자가 제 14.7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4.9.3 본 지원 계획의 예산이 소진된 경우;
 - 14.9.4 사후에 신청 프로젝트가 제 13.1 항에서 지칭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

15 협약서

- 15.1 기금은 수혜자와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협약서에는 지원 배정 결정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5.2 협약서를 서명하지 않는 경우의 결과: 수혜자가 기금이 지정한 날짜(협약서 체결 통지일로부터 일반적으로 30 일을 넘지 않음), 시간 및 장소에 따라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불가항력 또는 기금 행정위원회가 수혜자에게 귀책되지 않는 사유로 확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6 프로젝트 내용의 변경

16.1 아래와 같이 지원받은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변경의 경우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수혜자는 구체적인 실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보고서 제출 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6.1.1 관련된 홍보 및 프로모션 활동.

16.2 만약 지원받은 프로젝트 내용의 변경이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과 관련되는 경우, 특히 아래에 지칭한 상황에서는 수혜자가 신청을 제출하고 기금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16.2.1 당초 계획된 공개 상영 채널의 변경;

16.2.2 당초 계획된 영화제 참가의 변경;

16.2.3 수혜자의 기존 주주, 행정 관리 기관 구성원의 증감 또는 변경;

16.2.4 신청서에 기재된 프로젝트 팀 주요 구성원 중 과반수를 감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17 종합 보고서 및 합의된 절차 이행 보고서 제출

17.1 수혜자는 협약서 체결 익일부터 계산하여 60 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금에 프로젝트에 선정된 개업회계사, 회계사무소,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사,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회사에 대해 통지하고, 업무 약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2 지원대상자는 기금에 아래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기금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17.2.1 프로젝트 완료 후 30 일 이내에 기금에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고, 90 일 이내에 “합의된 절차의 실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수혜자가 실무 회계사, 회계법인,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사,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회사를聘請하여 수혜 프로젝트의 수입·지출 현황에 대해 합의된 절차를 실행한 후 작성하며, 관련 비용은 수혜자가 자체 부담).

17.2.2 수혜자는 작성 요구사항에 따라 상기 보고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3 제 17.1 항에서 언급한 업무 약정서 및 제 17.2.1 항에서 언급한 합의된 절차의 실행 보고서의 서식은 공공자산감독관리국이 발행한 제 001/GPSAP/AF/2023 호 「수혜 활동 또는 프로젝트 검증 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7.4 보고서에 첨부할 증빙 서류: 수혜자는 종합 보고서를 제출할 때 프로젝트 집행 상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
홍보·마케팅 및 배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급 계약 - 홍보물 이미지(예: 전단지, 포스터 등) - 홍보·마케팅 증빙(예: 오프라인 홍보 활동 사진, 온라인 홍보 스크린샷 및 클릭 데이터, 홍보 영상 파일 등) - 미디어 보도 - 영화제 참가 사진(각 영화제별 최소 6 장 이상) - 시사회 현장 사진(최소 12 장 이상) - 공개 상영 정보 및 판매 채널 관련 증빙(온라인 판매 플랫폼

스크린샷 또는 영화·영상 플랫폼의 배급/상영 채널 스크린샷 포함)

- 상영 성과 증빙(박스오피스 데이터 증빙 포함; 영화·영상 플랫폼 상영/인터넷 웹사이트 재생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클릭 트래픽 등의 증빙을 제공해야 함)
- 수상 실적 증빙

17.5 **보고서 제출 연기 신청:**불가항력 또는 기타 수혜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 17.2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수혜자는 관련 사실 발생일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기금에 통지해야 합니다.

17.6 상기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고서 제출 기간은 상기 사유가 소멸한 **일로부터 30 일 이내로 합니다.**다만 아래 조항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7.7 정당한 사유 설명이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기금 행정위원회가 제 17.2 항에서 정한 기간을 1 회 연장 승인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90 일을 넘지 않습니다.

17.8 기금이 제출된 문서에 불명확한 점이나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혜자는 기금이 지정한 기간 내에 문서를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기한 내 보완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문서가 여전히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재까지 제출된 문서를 종결 처리하며, 지연 제출에 따른 후속 결과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불가항력 또는 기타 수혜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종결 처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금은 지원 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8 지출 확인

18.1 **지출 확인의 목적 및 강제성:** 지원 대상자가 지원받은 활동과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발생한 지출이 본 장정에서

규정한 지원 가능 지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출은 반드시 기금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8.2 **확인**의 방식: 보조금은 수혜자가 제출한 **합의된 절차 수행 보고서**를 통해 **실제 지출 정산** 방식으로 확인하며, 수혜자는 보조 대상 사업의 원본 수입·지출 증빙을 최소 5 년간 완전하게 보관하여, 필요 시 기금의 검증에 대비해야 합니다.

18.3 **증빙서류에 대한 요구사항 :**

18.3.1 **지출의 상대가 회사 또는 기관:** 관련 지출 증빙, 예를 들어 회사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또는 영수증에는 매매 쌍방의 명칭 또는 성명, 제품 또는 서비스 명칭, 발행일자, 증빙 번호, 금액 및 판매자의 연락 정보(예: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가 기재되어야 하며, 또는 수혜자가 해당 회사 또는 기관의 위 연락 정보를 명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가 포함될 경우, 상기 정보 외에 인보이스 또는 영수증에 해당 부동산의 주소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18.3.2 **지출의 상대가 자연인:** 관련 지출 증빙으로서, 자연인이 발행한 영수증(매매 쌍방의 명칭 또는 성명, 제품 또는 서비스 명칭, 발행일자, 증빙 번호, 금액 및 판매자의 연락 정보(예: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가 기재되어 있거나, 수혜자가 위 연락 정보를 명기한 것), 직업세 M/7 형식 증빙(고객 및 발행자의 명칭 또는 성명, 서비스 명칭, 발행자의 세무 번호, 발행일자, 증빙 번호, 직업세 조례 부속서에 기재된 업종 및 금액)이 필요합니다.

18.3.3 **증빙서류의 기타 규정 :**

18.3.3.1 증빙서류의 지출 금액에 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실제 지급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18.3.3.2 기금의 보조금 사용 금액이 **10 만 마카오 파타카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기지급 인보이스 또는 영수증이어야 하며, 수혜자는 동시에 지급 거래 증빙(예: 수표 사본, 이체 기록, 온라인 결제 도구의 결제 기록, 현금으로 지급한 지출의 경우 실물 사진, 서비스 제공 과정의 사진 등 실증 자료)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지출이 중국 본토 소재 실체에 대한 지급 거래인 경우, 현지 통일 형식의 정규 인보이스도 제출해야 합니다;

18.3.3.3 마카오 파타카 이외의거래가 포함되는 경우, 수혜자는 해당 통화 명칭 및 환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18.3.3.4 증빙서류의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수혜자는 서면 설명을 해야 하며, 수혜자가 서명자로서 관련 문서에 서명하고 서명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18.3.3.5 증빙서류상의 정보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실에 따라 수정을 하고, 수정된 부분에 날인을 하여 효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18.3.3.6 거래가 제 19 항에서 언급한 연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는 증빙 서류에 이를 명시하고 관련 거래 상대방의 연락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9 연관 거래

본 규정의 적용을 위해 "연관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지원 대상자와 연관 관계가 있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지원 자연인 사업자의 경우, 그	대상자가	신청인/지원 사업자인 경우, 그	대상자가법인 연관
--------------------------	------	----------------------	--------------

연관 당사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당사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 신청자/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2. 지원 신청자/支持 대상자가 보유한 (자연인) 사업체; 3. 지원 신청자/지원 대상자가 지배주주¹ 또는 경영기관 구성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4. 제 1 항에서 언급한 사람이 보유한 (자연인) 사업체; 5. 제 1 항에서 언급한 사람이 지배주주 또는 경영기관 구성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금 신청자 또는 지원을 받는 회사의 지배주주(자연인 및 법인 주주, 특히 그 모회사 포함)와 행정 관리 기관 구성원,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인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이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2. 신청 지원 또는 지원을 받은 회사의 지배주주가 맡고 있는 회사, 특히 그 자회사도 관계자에 해당한다. 3. 제 1 항에서 언급한 사람이 보유한 (자연인) 사업체; 4. 제 1 점에서 지칭한 자가 다른 회사에서 지배주주 또는 행정 관리 기관의 구성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그 회사는 신청 지원 또는 지원을 받은 회사의 관계자이다.

¹ ***“지배주주”**란 단독으로 회사 자본금의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또는 다른 지배주주인 회사나 준(準)회사 계약을 통해 연계된 다른 주주와 공동으로 회사 자본금의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또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거나, 행정·경영기관 구성원 과반수의 선출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도 이에 포함된다.

- 19.1 신청인 또는 지원받은 자가 관계 거래를 진행할 때에는 관련 거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특히 거래 가격이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9.2 만약 신청 지원 단계에서 신청인이 관계 거래를 예상하거나 이미 진행했거나, 프로젝트 집행 단계에서 지원받은 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관계 거래를 이미 진행한 경우, 신청인 또는 지원받은 자는 각각 신청 서류 또는 총괄 보고서에서 이를 신고해야 하며, 아래 점 규정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9.2.1 기금의 지원금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인 또는 지원받은 자가 동일한 관계자와 거래한 누적 금액이 예상 또는 실제로 50,000 마카오 파타카 이상에 달하는 경우.
- 19.3 상기 점에서 지칭한 신고 대상 상황 중에서 기금의 지원금을 50,000 마카오 파타카 이상 사용한 경우, 신청인 또는 지원받은 자는 사전에 최소 2 곳의 비관계자 공급업자(즉, 제 19.1 점에서 지칭한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추가로 견적을 문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 19.3.1 견적 문의 서류에는 공급업자가 다른 견적 문의에 참여한 공급업자와 "서로 종속 관계가 아니며, 사전에 가격을 합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첨부해야 한다;
- 19.3.2 기금은 최저 가격의 견적을 지출 확인 상한으로 삼는다;
- 19.3.3 해당 견적 문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관련 지출은 기금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아래 점 규정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9.3.4 만약 관계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전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견적 문의를 하지 않아도 되나, 전용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널리 알려진 전용권 권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

19.4 신고한 연관 거래의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19.4.1 연관 당사자의 성명 또는 기관명, 연락처 ;
- 19.4.2 연관 당사자와 신청자 또는 지원 대상자 간의 관계 ;
- 19.4.3 연관 거래의 내용, 즉 예정 또는 실제 거래 날짜, 대상 및 금액 ;
- 19.4.4 연관 거래를 진행하는 이유 예시: 관련 거래 가격이 시장의 합리적 가격보다 우수함 ; 기술 또는 전문 역량 등의 이유로 연관 당사자가 동종 실체보다 우수하게 수행함 ; 연관 당사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전속권을 보유함 ;
- 19.4.5 연관 거래 가격이 합리적임을 설명하는 증빙 문서 또는 자료.

19.5 제 19.5.5 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는 19.4 항에서 언급한 견적 문의 문서를 거래 가격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증빙 문서 또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9.6 만약 지원 신청 단계에서 신고한 예정 또는 이미 이루어진 연관 거래 자료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자는 종합 보고서에 갱신된 자료와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9.7 신청자 또는 지원 대상자가**본章程의 연관 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기금 행정위원회는 연관 거래에 관련된 지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문서가 놓인 단계에 따라 기금 행정위원회가 지원 신청을 기각하거나, 교부를 하지 않거나, 교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 자금 지급 방식

20.1 자금은 아래 표의 비율에 따라 지급되며, 이는 하款 및 제 11.3 항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기수	첫 회차 (협약서 서명 후)	마지막 회차 (종합보고서 수락 후)
지원금 지급 비율	50%	50%

20.2 만약 수혜자가 다른 기금 지원을 받은 계획의 규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금은 관련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일시 보류할 수 있습니다.

21 수혜자의 의무

21.1 수혜자는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21.1.1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성명을 작성한다;
- 21.1.2 지원금은 배정 결정에서 지정한 용도에 사용한다;
- 21.1.3 지원 대상 프로젝트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계획·조직한다;
- 21.1.4 연관 거래를 진행할 때에는 관련 거래가 공정하고 합리적임을 보장하며, 특히 거래 가격이 시장의 합리적 가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21.1.5 제 17 항에서 언급한 보고서 및 증빙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한다;
- 21.1.6 지원금 사용에 대한 기금의 감독을 수락하고 협조하며, 관련 수치 및 재무 상태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다;
- 21.1.7 제 23.3.1 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한다;
- 21.1.8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을 반납한다;
- 21.1.9 지원 대상 프로젝트의 원본 수치 증빙을 최소 5 년간

완전하게 보관한다;

- 21.1.10 지원 대상 프로젝트를 위해 수혜자 명의로 마카오 은행에 전용 계좌(마카오파타카)를 개설하여 지원금을 보관한다. 단, 제 11.3 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수혜자는 프로젝트의 수입 및 자체 자금을 전용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미사용 지원금이 전용 계좌에 보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운영상 필요로 미사용 지원금을 다른 계좌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 수혜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 21.1.11 기금의 지시에 따라, 기금이 지정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며, 또한 지원받는 프로젝트가 기금이 지정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국가 공식 기관이 금지하거나 권고하지 않는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21.1.12 프로젝트에 대한 기금의 모니터링 업무, 교육 또는 홍보 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기금이 문서, 영상, 사진 및 기타 형태로 기록할 권리를 보유함에 동의한다;
- 21.1.13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홍보 활동, 보도자료 및 홍보물에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 문화발전기금 지원” 또는 “지원 기관: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 문화발전기금” 또는 이에 준하는 표현을 명시하고, 아울러 기금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정 문구, 도형 및 로고를 삽입한다;
- 21.1.14 협약서 체결 이후, 지원받은 프로젝트의 기본 정보 및 성과, 특히 사진, 문안, 이미지 파일 및 데이터가 기금의 웹사이트 및 대외 공개 문서에 공시되어 홍보·확산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한다;
- 21.1.15 제 4.3 점에서 지칭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이 다른 공공 부서 또는 기관에 지원받은 프로젝트

자료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취득하는 것에 동의한다;

21.1.16 지원받은 프로젝트의 내용 및 집행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프로젝트 성과가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성과를 산출하는 과정의 합법성을 보장한다. 여기에는 사용 도구, 채택한 방법, 취득한 정보 등이 포함되며, 외설, 폭력, 포르노, 음란, 도박, 상스러운 언어, 암시 또는 제 3 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21.1.17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1.1.18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 및 문화발전기금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1.1.19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1.1.20 기금과 체결한 협약서에 규정된 조항을 준수한다;

21.1.21 감독을 위하여 기금 및 공공자산감독관리국이 발한 지침을 준수한다;

21.1.22 제 18/2022 호 행정법규 「마카오특별행정구 공공재정 보조 제도」, 제 5/2023 호 사회문화부 장관 지시로 승인된 「문화발전기금 보조 지급 규정」, 기타 적용 가능한 법령 및 본 정관의 규정을 준수한다.

22 집행 종료 또는 활동 및 프로젝트 미완료

22.1 보조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은 수혜자가 제출한 프로젝트 집행 종료 신청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제 23.1 항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2.1.1 불가항력 또는 기금이 수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확인한 이유로, 보조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22.1.2 수혜자는 이미 수령한 모든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
- 22.2 제 22.1.1 항에 해당하고 기금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혜자는 기금이 지정한 기간 내에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여 결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22.3 제 22.1.2 항에 해당하고 기금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혜자는 신청 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미 수령한 모든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금은 강제 징수를 진행하고, 반환 기한 만료일로부터 2 년 동안 해당 수혜자의 보조 신청을 거부한다.
- 22.4 제 22.1 항에 따른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수혜자는 관련 프로젝트를 계속 집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금은 보조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 22.5 보조 기간이 만료된 후, 수혜자가 불가항력 또는 기금이 수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확인한 이유로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기금은 결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그 사유가 기금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금은 보조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 22.6 상기 사유가 아닌 이유로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기금은 보조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23 지원 배정의 취소

23.1 기금이 보조금 배정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

- 23.1.1 보조받는 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타 불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획득한 경우;
- 23.1.2 보조받는 자가 보조금을 배정 결정에서 지정한

용도가 아닌 목적에 사용한 경우;

- 23.1.3 보조받는 자가 신중하고 합리적인 계획 및 조직 의무를 위반하여 보조된 활동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참가자 또는 공익, 특히 공공의 안전 또는 사회 질서에 심각한 위험이나 피해를 초래한 경우;
- 23.1.4 보조받는 자가 수행한 활동이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 23.1.5 보조받는 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 및 문화발전기금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3.1.6 보조 대상 프로젝트의 영상 작품이 7 월 8 일 제 10/78/M 호 법률(본 지역에서 음란 및 외설물의 판매, 진열 및 전시에 관한 조치 규정)에서 규정한 음란 영화에 해당하거나, 해외에서 음란 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인 경우;
- 23.1.7 보조 대상 프로젝트가 저속함, 폭력, 음란, 외설, 도박, 상스러운 욕설, 암시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부적절한 요소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경우;
- 23.1.8 제 1 항 보조 목적, 제 3 항 보조 범위, 제 4 항 보조 요구사항, 제 5 항 신청 자격 및 신청 대상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으며, 기금이 정한 기간 내에 부적절한 사정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 23.1.9 본 정관에서 보조금 배정을 취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으로 정한 경우.

23.2 기금이 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 :

- 23.2.1 지원 대상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심사 결과가 핵심에서 벗어난 경우.

23.2.2 제 16.2 점에서 언급한 변경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지원 대상자가 변경된 내용을 계속 실행하는 경우.

23.2.3 제 17.8 점에서 언급한 상황.

23.2.4 지원 대상 사업 내용이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23.2.5 제 22.4 점부터 제 22.6 점에서 언급한 상황.

23.2.6 본 정관의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23.3 지원 취소의 결과 :

23.3.1 지원 대상자는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내에 이미 수령한 모든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3.3.2 제 23.1 점에서 언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은 지원 대상자가 지원 취소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년 내에 제출한 지원 신청을 거부해야 합니다.

23.3.3 제 23.2 항에 해당하는 상황인 경우, 기금은 지원 취소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해당 수혜자의 지원 신청을 동시에 거절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3.4 제 23.3.1 항에서 정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

23.4.1 정해진 기간 내에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미상환액을 반환하지 않고, 또한 서면으로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재정국 세무집행처에서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24 보조금 감액 및 서면 경고

24.1 수혜자가 보고서 또는 증빙서류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기금은 다음과 같은 보조금 감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황	보조금 감액
----	--------

<p>기한을 넘겨 종합보고서, 합의된 절차 이행보고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p>	<p>1. 발생 횟수에 따라 해당 보조 프로젝트의 보조금에서 다음과 같은 비율로 감액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발생 시: 5% 감액 - 2회 이상 발생 시: 10% 감액 <p>2. 위의 지원금 감액 상황은 제 9 항(지원 조정)과 합산하여 계산하며, 감액 후 지원금 = 승인된 지원금액 $\times (1-A) \times (1-B)$로 산출됩니다. A 및 B는 지원 감액 및 조정 비율입니다.</p> <p>비고:</p> <p>A는 제 9 항에서 말하는 지원 조정 비율입니다.</p> <p>B는 기한을 초과하여 보고或相関證明文件를 제출한 경우의 지원 감액 비율입니다.</p>
--	--

24.2 만약 수혜자가 본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특히 제 21 항에 규정된 수혜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금은 의무 위반의 성질과 중대성에 따라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서면 경고를 발할 수 있습니다.

25 기타

25.1 기금은 수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자금만을 제공하며, 수혜자의 어떠한 상업 활동이나 상업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수혜자가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든 없든 모든 의사결정, 활동, 발언 등은 기금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25.2 수혜자는 마카오 특별행정구, 중국 본토 및 기타 국가·지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혜자의 어떠한 활동 또는 의사결정으로 인해 마카오 특별행정구, 중국 본토 또는 기타 국가·지역의 법률을 위반하여 민사, 형사 또는 행정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수혜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25.3 수혜자는 관련 부서(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해외 포함)에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각종 인허가 및 허가 문서를 스스로 신청하고 취득해야 합니다.

25.4 기금은 각 신청 라운드 시작 전에 본 정관의 규정을 수정할 권리가 있으며, 수정된 정관은 이후 각 라운드의 지원 신청에 적용됩니다.

25.5 신청인이 본 계획에 참여하는 경우, 본 규정의 모든 조항과 내용을 상세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하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5.6 본 정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적용 가능한 현행 법령에 따라 규율되며, 특히 제 40/2021 호 행정법규 「문화발전기금의 조직 및 운영」, 제 18/2022 호 행정법규 「마카오 특별행정구 공공재정 보조금 제도」, 제 5/2023 호 사회문화부 장관 지시로 승인된 「문화발전기금 보조금 지급 규정」 및 기타 문화발전기금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25.7 본 기금은 본 정관에 대한 최종 해석권과 결정권을 가집니다.

26 문의 방법:

전화:2850 1000.

팩스:2850 1010.

전자우편:dgaf@fdc.gov.mo.